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문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이은경, 김정선 ☎ : 797-8200)

제 목 지구적 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날 짜 1996. 5. 17. (총9쪽)

보 도 자 료

지구적 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WTO 및 OECD의 반부패 논의와 한국사회 반부패정책의 현주소

일시 및 장소 : 5월 17일 오후 1시 30분 , 여의도 국회의사당내 의원회관 소회의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구적 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사회자 朴恩正 (이대 법학,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金令鍾 (숭실대 행정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김영종 교수는 발제문에서 세계각국은 국내적으로 반부패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부패추방을 위한 세계 공동 노력과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의도에서건 세계무역기구에서 부패기업과 부패국가에 대한 무역제재 방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또한번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신한국당 안상수(安商守)의원,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 민주당 제정구(諸廷坵)의원, 자민련 김창영(金昌英) 부대변인, 한국은행 조영제(趙英濟)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태호(朴泰鎬)부원장, 강경근 (姜京根,숭실대)교수가 참석, 부패통제(의 국제적 동향과 국가부패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지난 총선 후보자들에게 부패방지법 제정약속 서명을 받은데 이어 당선자들에게도 후속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 별첨 : 행사안내서 1부, 발제문 요약 1부

※ 별첨

1. 행사안내서

일시 : 1996년 5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내 의원회관 소회의실

사회자 ;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대)

인사말 : 김창국 변호사 (金昌國, 전 서울변협회장,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발제자 : 김영종 교수 (金令鍾, 숭실대 행정학)

토론자 : 신한국당 안상수(安商守)의원,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
민주당 제정구(諸廷坵)의원,
자민련 김창영(金昌英) 부대변인,
한국은행 조영제(趙英濟)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태호(朴泰鎬)부원장,
강경근 (姜京根,숭실대)교수

별첨2

- 발제문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을 중심으로

김 영 종 교수
숭실대행정학과,한국부패학회회장

Ⅰ. 문제의 제기

최근에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등 4국 통상장관들은 '국제영업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OECD권고'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있을 WTO 각료회의에서도 반부패금지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전망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아시아 각국은 부패방지법을 독립법으로 입법하여 왔고, 미국, 영국, 호주등도 부패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현행 부패통제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능한 선별적인 반부패정책방안(alterna-tive anti-corruption public policy)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부패방지방안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상적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방지대책은 정치부패개혁, 사회부패개혁, 그리고 기업부패개혁에 이르기까지 보다 통합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나, 여기에서는 공무원부패 문제에만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본다.

Ⅲ. 부패방지제도의 국제적 동향

부패현상을 보는 시각은 1960년대에서는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보아왔다. 즉 부패를 마치 발전과정상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필요악(necessary evils)적인 부산물로 생각한 주장이다. 반면에 1970년대에 와서는 후기기능주의(post-functionalist)적 시각에 의하여 부패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서 부패의 자기영속적인 속성을 주장하는 접근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서는 부패현상을 두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수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선진국이나 후진국 어느나라에서나 유발되는 보편적 현상이고도 상호 복합적인 현상이며 그 양자의 변수를 보완적으로 보는 통합적(integrated)인 입장이 있다.(김영종, 1993년)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소위 소련과 동구, 중국의 개방화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쇠퇴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우세하기 시작하고, 아울러 부패의 현상이 전세계의 각국가에서 더욱 만연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holmes,1993) 이와 아울러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지역, 혹은 국제적 조직별로 반부패의 동향을 살펴본다.

첫째, 반부패에 관한 가장 큰 국제적인 학술대회는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이다. 이 대회는 1983년 10월 미국 와싱톤시에서 13개국 21개 기관대표들이 모여서 정부내 부패와 기타 경제범죄 추방을 대회주제로 한 이후 1985.10,(미국뉴욕), 1987.11(홍콩), 1989.11(호주), 1992.3(네델란드), 1993.11(멕시코), 1995.10(중국 북경)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년 마다 개최되는 이러한 국제적인 반부패의 학술적인 조직에는 각국의 부패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가 주로 참석하지만 그외에 검찰, 경찰, 회계검사, 감찰기구등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부패추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협조를 강구하기도 한다. 특히 1992년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렸던 5차회의에 필자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되어 논문을 발표하였고, 대회폐회전 전참석자들은 부패에 대한 국제간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사실을 유엔의 국제기구등에 알려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공직자의 공공윤리와 반부패를 논의하는 또하나의 국제적인 학술조직으로는 국제공공윤리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Ethics in Public Service)이다. 이 학회는 1990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후, 1992년에는 이태리에서, 1993년에 다시 이스라엘에서 열렸고 1994년에는 스웨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다시 이스라엘에서 열렸으며, 1996년에는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국제적인 학술조직은 공공윤리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상 반부패의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이고, 필자는 이스라엘서 1993년과 1995년에, 그리고 1994년에는 스웨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반부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셋째, 최근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뇌물수수등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1976년에 CIME(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의 행동기준에 관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주재국 정부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뇌물 및 부정한 이권제공금지를 골자로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을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1994년 5월에는 "국제적 영업거래에 있어서의 뇌물방지에 관한 OECD 각료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가 채택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원국들은 자국기업의 국제영업거래에 있어서 타국공무원들에게 뇌물제공등의 방지를 권고한다.

(2). 외국공무원의 법적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금전적 혜택과 이권은 뇌물로 본다.

(3). 각국가는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금지를 위한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조세법, 기업회계기준,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4) OECD 회원국가간에 있어서 국제간의 정보교환, 증거제공, 범죄인도등의 협력을 하고, 뇌물수

수행위등의 금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과 제도를 마련한다.

(5). 비회원국가와 국제기구에 있어서 부패추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CIME에게 이 권고안의 집행을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국제기업거래뇌물수수방지작업단"의 구성운영을 촉구한다. 예를들면 회원국가들의 동권고안의 준수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국제영업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수수에 대한 특정의제의 조사, 비회원국의 참여방안 강구, 뇌물에 대한 조세부과등의 조치를 연구한다. 그리고 CIME가 OECD총회에 최초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3년 이내에 동권고안의 수정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세계각국의 부패방지 관련법은 다음의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세계각국은 부패방지의 독립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부패에 대한 방지를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하여 해결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Brzezinski,1990; Heidenheimer,1978; Holmes,1993; Lewis,1991; Heady,1993, 1994; Scott,1972; Carino 1986)

Ⅳ한국의 부패방지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방지제도는 산만하고 부적절하다. 여기에서 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본다.

1. 다원적인 체계로 적실성이 부족한 부패방지제도

2. 감사기관 상호간의 갈등유발과 중복감사 유발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실효성문제

4. 공직자의 의식개혁의 미흡문제

5. 시민의 부패관행과 부패문화 개혁을 위한 사정교육정책 미흡

6. 공직자의 철저한 사정교육 개발의 부족

7.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민 홍보 부족

8. 반부패전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수집과 교환부족

9. 부패예방과 처유의 연계성 정책개발 부족

Ⅴ. 부패방지 제도의 개혁 방안

현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산발적으로 입법화되어 있는 부패관련법은 오히려 그 적실성, 효율성,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부패관련법은 통합되거나 일원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제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1. 감사원의 기능강화와 부패사건 수사권 부여방안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최고의 국가사정기관임에 틀림없다. 그 주요한 임무는 공무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다. 감사원은 1995.1.1 이후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그 기능이 다소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의 감사원 법을 대폭개정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감사원의 인적 혹은 물적지원의 대폭적인 제도개혁이 요청된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기능을 감당할 감사원은 인적, 물적, 조직면에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감사원은 사정교육정책을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다.

2. 통합부패방지법의 입법과 독립된 부패방지수사기구 설치방안

현행 검찰의 부패방지 관계법규는 매우 산발적이고 복잡할 뿐만아니라 그 효율성과 적실성이 미흡하다는 논리와 현실적 상황의 근거(예:5.18문제에 있어서 성공한 쿠데타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소를 포기하였다가 국민여론과 대통령의 의지변경으로 재수사한 사례)로 독립부패방지기구의 설치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왔다. 예컨대 검찰의 기능은 속성상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예: 검사동일체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므로 부패방지의 정책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가장 개혁이 안되고 있는 부처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통합부패법의 입법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에서 규정할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패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제1장의 총칙에서 법의 목적과 함께 부패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청된다. 예를들면 호주의 부패방지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의 경우 부패의 개념을 확대하여(8조)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 공직의 독직(official misconduct), 뇌물(bribery), 사기(fraud), 절도

(theft), 횡령(embezzlement), 선거뇌물(election bribery), 세금포탈(tax evasion), 불법적마약거래(illegal drug dealings), 불법적도박(illegal gambling), 기업의 불법행위(company violations), 폭력(violence)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패방지법에 포함될 부패의 내용은 단순한 뇌물만이 아니라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법상의 일반범죄도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있다.

(2). 독립적인 부패수사와 반부패정책 수립 기구설치

기존의 관련법규를 통폐합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기구의 통합부패방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다. 통합부패방지법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한을 부패사건에 한하여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반부패의 사정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정정책의 결정과 집행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요한 요원은 부패방지위원, 수사관, 교육관, 행정직원 등이다. 특히 최고정책결정기관인 부패방지위원은 감사원법 제7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부패연구의 전문가, 고급 공무원 , 판검사와 변호사등으로 구성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부패방지관련법을 입법한 국가는 싱가폴(1960), 홍콩(1948), 타이완(1973), 타일란드(1975), 필리핀(1960), 인도(1947), 말레이지아(1961), 미국(1978), 영국(1906)등 많이 있다.

(3). 공직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그리고 심사의 확대 강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후 그동안 여섯차례 이상이나 개정되었다. 신정부수립후 대폭 개정되어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규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엄격하게 말하면 공직자 부패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계좌추적이 곤란하고, 처벌이 약하며, 윤리위원회의 사명감이 미약하거나 불성실한 경우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도는 부패방지법으로 강화 보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 특히 국가의 주요공직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차관, 국회의원, 감사위원, 법관 이나 검사등은 퇴직시에도 재직시의 재산변동을 공개 할 필요가 있다.

(4). 내부고발자와 외부고발자 보호규정

외국의 경우 고발자의 보호는 강력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특별조사국(OSC)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와싱톤주등 15개주가 보호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mendements Act)에 의하여 기업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1979년에 "장려보호검거오독직변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고발한 자를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1960) 제34조에 제보자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알게 된 부패사건의 정보고발(외부고발자 보호)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5). 돈세탁방지규정의 문제

세계각국은 돈세탁금지를 입법화하는 추세이다. 예컨대 미국은 BSA(Bank Secrecy Act, 1970), RICO(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1970), 그리고 CSA(Controlled Substance Act, 1970)등을 제정하여 부정축재한 재산의 몰수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본격적으로 돈세탁금지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를 입법화 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1992년과 1990년의 형법에 돈세탁의 범죄성을 삽입규정하였다. 1991년의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린 제5회 국제반부패학술대회에서는 돈세탁금지에 대한 국제간의 공조체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하였다. 돈세탁금지 입법에 대하여서는 금융실명제등으로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으나 최근 전,노 두전직대통령들이 비자금을 돈세탁한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돈세탁금지가 입법되어야 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한 실정이다.

(6). 공직자 부패관련 축재 몰수 특례규정의 흡수

이것은 부패관련으로 인하여 축재한 불법적인 재산은 몰수한다는 현행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통합부패방지법에 흡수하고 체계화 시킨다는 내용이다. 몰수는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패공직자는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를 당하여 실형을 받고 나와도 평생 먹을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세평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즉 부패관련 축재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관행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법에서 불법적으로 축재한 것은 결코 나의 재산이 안된다는 사회정의를 심어주는 의미도 있다.

(7). 전공직자 사정교육과 범국민 도덕재무장교육의 정책개발

이 법에서는 모범적인 공직자를 발굴, 특별포상과 승진제도에 반영시키고 아울러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정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건전한 공직관과 의식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도덕재무장 교육을 할 수있는 법적근거와 정책개발을 하도록 한다. 부패는 결코 단편적인 처벌이나 제도개혁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이 개혁되고 부패관행과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이규정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사정교육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반부패의식을 개혁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김 영종,1993)

(8).로비금지의 규정문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로비금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는 이미 1946년에 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을 만들어 일정한 자격자를 등록시키고 그 활동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heodore J. Lowi는 "The End of Liberalism(1979)"에서 미국사회는 로비로 인하여 국가의 주요 기관이 이익단체의 노예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패를 가속화 시킨다고 지적한다.

(9).중앙부패방지위원과 지방부패방지위원 설치

부패방지위원회(Independent Committee for Anti-Corruption)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 그 이유는 a.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않고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b.기존의 제도적 장치하에 있는 권력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c.부패사건을 일반범죄와 분리 일원화 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점. d.부패의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점. e.지방화시대에 새로운 지방정치행정 그리고 토착형 부패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통제장치가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주장할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는 이제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주요국가들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독립된 관련법과 엄격한 처벌, 반부패교육과 홍보,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등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방지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특히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조직등을 통하여 국가간의 반부패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OECD나 WTO 같은 국제적인 경제조직체에서도 국가간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뇌물등의 제공이 관행으로 있어온 구조적인 부패관행을 규제하자는 국제동향을 주목하여야 할것이다.

. 공직자는 국가발전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봉사자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부패는 정당한 행정비를 증대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일으키고, 국가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심한 경우는 망국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부패의 추방은 국가사회적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는 얼핏보면 완벽한 제도적 장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문제점이 많다. 그 문제점이란 부패관련법규가 복잡하게 다원화되어 있어서 정책집행상의 적실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방지에 대한 관련법의 적용과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해 재발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몇가지 대안으로서 감사원의 기능강화, 부패방지법체계의 일원화, 제도의 체계화,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입법화에 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공직자 부패의 방지대책은 강력하고도 통합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그리고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비중을 두는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와 의식의 개혁, 사정교육의 확대, 최고정책결정자의 반부패정책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고할 때 효과적인 부패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자 부패방지는 단순한 제도개혁만으로는 미흡하며 부패의 나무를 키우는데 공동책임이 있는 일반시민들의 부패관행과 부패문화도 바뀌어져야 성공적이 될 수 있다.